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1. 감사 개요

□ 감사초점과 감사범위

- 감사초점 : 2010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자체지침
(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집행지침) 위반 해당 사항
 - 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에서의 사용
 - * 노래방, 골프장, 유흥주점 등 예산집행지침 상 사용제한업종에서의 집행액 및 사용 사유(클린카드의 사용제한업종 해제실태 포함)
 - 위장가맹점에서의 사용
 - *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 결제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, 심야(23시 이후) 시간 사용사유 등
 - 사적인 목적의 사용
 - * 주말·공휴일·자택 인근 사용, 백화점·면세점 등에서의 물품 구입, 상품권 구입 후 처리내역 등
- 여타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집행지침 을 위반한 사항 점검
 - *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작성, 고액 업무추진비 분할결제, 부서활성화비 개인카드 또는 현금 집행내역 등
- 감사범위
 - 2010.1.1일~12.31일간 클린카드 집행내역
 - 업무추진비, 부서운영비 대상

□ 감사방법 및 감사과정

- 감사방법
 -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
 - 서면감사 : 회계담당부서(인사총무팀) 제출 자료 점검
 - 실지감사 : 관련자료 실지 점검, 회계 및 사업담당자 면접 확인
- 감사기간 : 7.18일~8.11일

- 투입인원 : 총 5인
 - 자체 감사실 직원 : 4인
 - 외부감사인 : 공인회계사 1인

□ 감사기준

- 2010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
 - 사업추진 위한 접대비 성격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
 -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
 -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, 일시,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 명확화
 - 클린카드 사용 제한업종

- 유흥 업종(룸싸롱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나이트클럽)
- 위생 업종(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)
- 레저 업종(실내·외 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)
- 사행 업종(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)
- 기타 업종(성인용품점, 총포류판매)

-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(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경위 소명,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)
-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(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실명 기재)
-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집행지침 ('10.03.30자 기준*)
 - * 자체지침은 '09.10.01 제정이후 '10.03.30, '10.10.18 각각 개정. 본 감사에서는 '10.03.30 개정 지침을 적용
 - 법인카드 등 사용원칙 및 관리
 -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는 법인카드 또는 세금(계산서) 사용
 - 모든 법인카드는 클린카드제 적용. 향락·사치 업소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및 예산 집행 금지. 단, 임직원 호프데이, 특별간담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인카드 1매는 예외. 또한 직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사용된 영화관람, 공연 등의 부서활성화비는 예외
 - 심야시간(23시~익일 6시) 및 공휴일 사용 제한.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고 감사실 열람. 단, 국외사용은 예외
 - 사용시간 제한은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개인카드에도 적용. 사용 시

사유서 제출

-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법인카드 담당부서에서 연 1회 현금화하여 예산 수입으로 계상. 현금화 어려운 경우 별도 활용 방법을 정하여 시행 가능
-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
 -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내역서 작성
 - 고액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하로 분할결제하는 행위 금지. 다만, 불가피한 경우 내부결제 및 감사담당부서의 열람
- 부서활성화비 집행 및 관리
 - 부서활성화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화관, 공연장, 볼링장 등 법인카드 사용제한장소에서의 예산집행 인정. 다만, 개인카드 또는 현금 등으로 선집행한 후 사용금액의 집행 요청
 - 고액의 사치성공연 관람 등 지양

2. 감사결과

- 주말 사용건 중 회계처리 시 사유서 미제출 2건에 대해서는 사유서 보완 제출 및 재발 방지 등을 촉구(권고)
- 법인카드 마일리지 관리와 관련, 자체규정 준수(연 1회 현금화)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을 촉구(개선)
- 부서활성화비의 개인카드 또는 현금 선집행에 대해서는 사용가능업종에서의 집행 및 사용방법 개선 등을 촉구(권고)